

전주지방법원 2021. 3. 10 선고 2019가단23772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1나3727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3. 10 선고 2019가단23772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피 고 1.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송

담당변호사 박정훈

변 론 종 결 2021. 1. 20.

판 결 선 고 2021. 3. 10.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092,483원 및 위 돈 중 144,092,204원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2019. 12. 3.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A, B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47,844,6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8. 5. 16. 피고 A와 사이에, 위 피고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받을 160,000,000원의 대출금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원금을 144,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8. 5. 16.부터 2019. 5. 15.까지로 정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대위변제수수료 등'을 상환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5. 16. 주식회사 D에게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위 피고는 대출금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9. 8. 23. 주식회사 D에게 위 대출금 중 원금 14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5. 24.부터 2019. 8. 22.까지의 이자 1,365,411원 합계 145,365,4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위변제일에 위 대위변제금 중 1,273,207원을 회수하였는바,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위변제금 144,092,204원과 위 회수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연 8%의 비율로 정한 손해금 279원 합계 144,092,483원 및 그 중 144,092,20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8.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8%의 비율로 정한 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2)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신용보증에 따른 대위변제

가) 원고는 2018. 5. 16. 피고 A와 사이에, 위 피고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받을 160,000,000원의 대출금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원금을 144,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8. 5. 16.부터 2019.

5. 15.까지로 정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대위변제수수료 등’을 상환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5. 16. 주식회사 D에게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2019. 8. 23. 주식회사 D에게 위 대출금 중 원금 14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5. 24.부터 2019. 8. 22.까지의 이자 1,365,411원 합계 145,365,4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 A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가) 피고 A는 2006. 5.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A는 2019. 2. 7.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8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2019. 3.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1998. 7. 31.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B, 근저당권자를 E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9. 5. 15.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 C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9. 8. 23. 피고 A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구상금채권을 가진다. 피고 A와 피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9. 2. 7. 당시에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이미 피고 A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는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2019. 6. 1.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신용보증에 따라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7. 피고 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C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 47,844,6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C의 항변

피고 C는 피고 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로 인하여 피고 A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참조).

2) 판단

위 가의 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A의 신용보증인으로서 2019. 8. 23. 주식회사 D에게 피고 A의 대출금채무 중 145,365,411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위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가의 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A는 피고 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9. 2. 7. 이후로도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받은 160,000,000원에 대한 2019. 5. 23.까지의 이자를 납입한 점, ② 피고 A는 'F'을 운영하다가 2019. 6. 1. 폐업하였고, 주식회사 D은 피고 A의 폐업을 이유로 2019. 6. 12. 위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부실처리하고 같은 해 6. 26. 원고에게 보증사고발생사실을 통지하였는바, 피고 A는 피고 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 4개월 이후에 자신의 사업을 폐업한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대출금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이 지나서 폐업을 하였다는 사정 외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피고 A의 폐업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조합에 대하여 총 86,699,375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E조합장에 대한 2020. 7. 17.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는 피고 A가 아닌 피고 B이다), ④ 원고는 피고 A가 폐업을 한 후 약 3개월이 지난 2019. 8. 23. 주식회사 D에게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6~7개월이 지나서야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라. 소결론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문

목록

1. 전북 완주군 G 대 146㎡
2. 전북 완주군 G 지상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1층 73.14㎡(주택 23.46㎡, 소매점 49.68㎡)
 - 2층 73.14㎡ 주택. 끝.